

[별표 14의4] <개정 2013.3.23>

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(제102조제2항관련)

시 험 조 건	차 체 강 도 기 준
1. 완성차의 전복시험 2. 완성차를 대표하는 주요차체구조물 의 전복시험	차체구조물의 변형된 부품이 승객거주 공간을 침입해서는 아니되며, "승객거 주공간"의 부품이 변형된 차체구조물 밖으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차체구조 물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.

주 : 1. "승객거주공간"이라 함은 4.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최외측 좌우 좌석의 착석기준점에 대하여 바깥쪽 150mm인 각 지점과 착석 기준점 상방 750mm, 안쪽 100mm인 각 지점을 연결한 수직횡단면을 승합차의 최후단 좌석에서부터 최전방승객좌석까지 연결한 체적공간을 의미한다.

2. 위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하여 일부 구조 및 장치의 변경으로 차체강도의 재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체일부분에 대한 진자(Body Section Pendulum)시험 또는 강도계산법에 의한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.